

18.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9년 2월 28일
- 발의의원 : 홍인표·김지만·김원규·이진련·이태손·하병문·윤영애
의원
- 회부일자 : 2019년 3월 4일
- 상정일자 : 제26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19년 3월 19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홍인표 의원)

제안이유

- 가로수 관련 조례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 적용대상 범위와 용어 정비(안 제2조, 제3조)
- 원인자·손상자부담금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 가로수 식재·관리 부문, 녹화기금 조항 삭제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이재규)

□ 개정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가로수 관련 조항 삭제 및 일부 규정 정비를 위한 것임.

□ 적법성 여부

- 상위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검토사항

- 본 개정 조례안은 2018.12월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별도 제정됨에 따라 가로수 관련 규정 삭제 및 대구광역시 녹화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보면

제11조(가로수의 식재·관리), 제13조(시민관리제 실시), 제14조(관리위탁), 제15조(손상자부담금등)로 구성된 제4장(가로수의 식재·관리) 전체를 삭제하고,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32조(가로수등의 관리대장)에서는 가로수 문구를 삭제·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녹화기금 관련 규정인 제27조(기금의 설치), 제28조(기금의 조성), 제29조(기금의 운용), 제30조(기금의 용도), 제31조(기금관리 공무원) 및 제21조 제3항(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녹화기금 심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임.

녹화기금의 경우 조례 제정 당시(1998년)부터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기금을 한 차례도 운영한 바 없고, 별도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2018.12월에 별도 제정됨에 따라 가로수 관련 조항 및 문구를 삭제하고,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운영된 바 없는 대구광역시 녹화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 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